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변호사의 국회의원 겸직 금지〉

■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963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병 섭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변호사의 국회의원 겸직 금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3. 14.
3. 회부연월일 : 2025. 3.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이외에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일부예외를 제외하고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제한의 예외사유에서 국회의원을 삭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하고자 합니다(안 제38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변호사의 국회의원 겸직 금지

현행	개정안
제38조(겸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u>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u>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겸직 제한) ① ----- ----- ----- <u>지방의회</u> <u>의원 또는 상시</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변호사¹⁾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등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 중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1) 현행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변호사’는 단순히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활동 중인 변호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은 제38조제3항 규정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음.

「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제7조(자격등록)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8조(겸직 제한)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년 개정된 「국회법」 제29조 및 제29조의2²⁾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직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부 예외를 제외한 영리활동 역시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변호사법」에서 국회의원은 겸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법체계의 통일성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2013년 개정된 「국회법」 규정]

국회법 [시행 2013. 5. 22] [법률 제11820호, 2013. 5. 22, 일부개정]	국회법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108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29조(겸직) ① 의원은 <u>정치활동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있다.</u>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u>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u>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u> 은 제외한다.	1. <u>공익 목적의 명예직</u>
2. <u>대통령 · 헌법재판소재판관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지방의회의원</u>	2. <u>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 · 위촉되도록 정한 직</u>
3. <u>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u>	3. 「정당법」에 따른 <u>정당의 직</u>

- 2) (2013. 8. 13. 개정) 개정이유-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의원직 이외에 겸직이 포괄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가 아니면 영리업무 종사에 대하여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는데, 이러한 현행 규정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서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의원의 특혜로 인식되어 온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19057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 7. 2. 본회의 원안가결, 2013. 8. 13. 공포)

국회법 [시행 2013. 5. 22] [법률 제11820호, 2013. 5. 22, 일부개정]	국회법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108호, 2013. 8. 13, 일부개정]
의 신분을 가지는 직 ②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 이에 개정안은 「국회법」 규정을 반영하여 변호사의 국회의원직 겸직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국회의원직이라는 공직과 변호사 업무라는 사적 업무 간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여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국회의원은 국가의 입법과 예산안·결산 심사 등 국정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직으로서 고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직위이며, 이러한 공적 책무와 변호사 업무가 가지는 사적 이해

사이에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음.

특히 변호사로서 수행하는 업무가 국회의 입법 또는 대정부 견제 기능과 충돌할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

또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이 이미 제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법체계 간 정합성을 도모하고 법 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관계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은 변호사법을 국회법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어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변호사법 제38조의 겸직 제한 규정과 국회법 제29조의 국회의원 겸직 금지 규정 간 내용이 불일치한데, 변호사의 겸직 제한은 1949년 변호사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해 온 반면 국회법상 규정은 2013년 개정된 점을 감안할 때, 국회법에 맞춰 변호사법을 정비하려는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 6788-5060